



성동구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하천점용허가 연장에 따른 점용료(부담금) 결정결의 등록(종로, 중구청)**

1. 재무과-35601호(2014. 12. 26.)와 관련됩니다.
2. 우리 구 관내 공공용지(하천) 점용 연장허가 처리에 따라 하천점용료(부담금)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.

가. 점용료(부담금) 결정 결의 내역

연번	신청인	점용장소	점용면적 (m ²)	부과금액 (원)	부과기간	비 고
1	종로구청 (청소행정과)	송정동 78-1 (전농천 복개지 청소차고지)	1,653	66,120,000	2015.1.1.~ 2015.12.31	구일반
2	중구청 (청소행정과)		1,653	66,120,000	2015.1.1.~ 2015.12.31	구일반
계				132,240,000		

나. 납부기한: 2015. 3. 31.까지

- 붙임 1. 징수결정결의서 1부.
2. 부과결의내역서 1부. 끝

주무관

차소연

재산정책팀장

박광호

재무과장

김성철

기획재정국장

전결 01/05
김종순

협조자

시행 재무과-118 () 접수 ()

우 133-70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/ <http://www.sd.go.kr>
전화 02-2286-5267 / 전송 02-2286-5916 / hangsang33@sd.go.kr / 부분공개(6)